

# 목 차

참 고 서 류 .....	1
I. 권유자·대리인·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	2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2
2. 대리인에 관한 사항 .....	2
3. 피권유자의 범위 .....	2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2
5. 기타 사항 .....	2
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3
□ 재무제표의 승인 .....	3
□ 정관의 변경 .....	75
□ 이사의 선임 .....	88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89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90

#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귀중

제 출 일: 2016년 3월 3일  
성 명: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권 유 자: 주 소: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51 롯데타워  
전화번호: 02-829-4114

# I. 권유자 · 대리인 · 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롯데케미칼(주)	보통주	-	-	본인	

※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34,275,419주입니다. 이 중 자기주식인 보통주 583,388주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는 보통주 33,692,031주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롯데물산(주)	최대주주	보통주	10,718,818	31.81	최대주주	
(주)호텔롯데	계열회사	보통주	4,346,818	12.90	계열회사	
Lotte Holdings CO.,LTD (日本)	계열회사	보통주	3,186,000	9.46	계열회사	
신 동 빈	대표이사	보통주	90,705	0.26	대표이사	
롯데문화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11,495	0.03	특수관계인	
계			18,353,836	54.48		

## 2. 대리인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비고
이승훈	-	-	직원	-
박창만	보통주	100	직원	-

## 3. 피권유자의 범위

2015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필요한 정족수 확보

## 5. 기타 사항

가. 위임권유기간 : (시작일) - 2016년 3월 5일, (종료일) - 2016년 3월 17일

나. 위임장용지의 교부방법

- 권유자 또는 대리인이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하는 방법(권유자가 발행인인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http://www.lottechem.com
홈페이지의 관리기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시 안내여부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안내함

다.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년 3월 18일 9시  
 (장소) - 전문건설회관 3층 국제회의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소재)

라.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 (성명) - 박창만  
 (부서 및 직위) - 일반지원팀 책임  
 (연락처) - 02) 829-4231

## 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람.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1) 연결재무제표  
 - 연결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대 표  
 제 40(당) 기 말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39(전) 기 말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과 목	주식	제 40(당) 기 말		제 39(전) 기 말	
		2015년 12월 31일 현재	2014년 12월 31일 현재	2014년 12월 31일 현재	2013년 12월 31일 현재
자 산					
I. 유동자산			5,405,499,989,622		4,321,552,617,111
1. 현금및현금성자산	38,41	1,942,218,655,868		949,302,735,384	
2. 단기금융상품	4,38	841,697,947,914		313,606,363,436	
3. 매도가능금융자산	6,38,39	45,639,020,000		20,348,875,000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38,40	1,016,335,868,734		1,268,432,981,044	
5. 재고자산	8	1,162,746,555,678		1,528,109,897,449	
6. 금융리스채권	9,38	138,598,084		222,114,588	
7. 당기법인세자산		18,567,576,319		22,334,476,557	
8. 기타금융자산	7,21,38,39	16,740,348,522		14,566,144,494	
9. 기타유동자산	10	361,415,418,503		204,629,029,159	
II. 비유동자산			6,062,308,909,152		6,001,103,002,178
1. 장기금융상품	4	67,509,500,000		50,512,000,000	
2. 매도가능금융자산	6,38,39	193,646,663,061		167,436,011,673	
3. 금융리스채권	9,38	3,139,735,572		3,181,118,858	
4. 관계기업투자	11	846,144,172,015		738,665,448,363	
5. 공동기업투자	12	800,374,671,919		783,561,064,648	
6. 유형자산	14	3,964,852,431,989		3,975,810,386,927	
7. 투자부동산	15	81,298,743,603		84,247,016,415	
8. 영업권	16	3,196,151,567		3,196,151,567	
9. 기타무형자산	17	34,442,559,894		20,362,884,418	
10. 기타금융자산	4,7,21,38,39	8,277,637,186		9,071,325,009	
11. 기타비유동자산	10	4,655,761,108		7,670,050,071	
12. 이연법인세자산	35	54,770,881,238		157,389,544,229	
자 산 총 계			11,467,808,898,774		10,322,655,619,289
부 채					
I. 유동부채			2,146,107,848,882		2,057,809,967,357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8,38,40	934,257,282,162		724,825,882,322	
2.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9,38,39	179,284,262		8,773,074,559	
3. 차입금및사채	20,38	911,337,908,046		1,092,991,431,061	
4. 당기법인세부채		157,692,458,677		48,498,991,290	
5. 기타금융부채	21,22,38,39	57,933,582,156		77,642,098,427	
6. 기타유동부채	25	75,530,844,307		101,698,203,745	
7. 충당부채	24	9,176,489,272		3,380,285,953	
II. 비유동부채			1,766,114,975,036		1,795,846,882,669
1. 차입금및사채	20,38	1,500,781,746,218		1,510,857,226,709	
2. 순확정급여부채	23	30,263,275,849		26,207,544,854	
3. 이연법인세부채	35	204,218,459,079		220,408,408,379	
4. 기타금융부채	21,22,38,39	17,651,966,771		26,064,100,154	
5. 기타비유동부채	25	3,398,126,882		4,365,665,480	
6. 충당부채	24	9,801,400,237		7,943,937,093	
부 채 총 계			3,912,222,823,918		3,853,656,850,026
자 본					
I.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7,524,751,244,619		6,437,098,705,381
1. 자본금	26	171,377,095,000		171,377,095,000	
2. 기타불입자본	27	476,522,242,395		476,522,242,395	
3. 이익잉여금	28	6,739,344,145,893		5,790,777,027,820	
4. 기타자본구성요소	29	137,507,761,331		(1,577,659,834)	
II. 비지배지분			30,834,830,237		31,900,063,882
자 본 총 계			7,555,586,074,856		6,468,998,769,26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1,467,808,898,774		10,322,655,619,289

- 연결 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0(당)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39(전)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식	제 40(당) 기		제 39(전) 기	
I. 매출	3,30,40		11,713,338,201,119		14,858,969,270,208
II. 매출원가	36,40		9,646,291,210,590		14,058,561,842,108
III. 매출총이익			2,067,046,990,529		800,407,428,100
판매비와관리비	31,36,40		455,927,525,047		449,478,910,448
IV. 영업이익	3		1,611,119,465,482		350,928,517,652
금융수익	3,32		145,410,485,658		129,490,442,812
금융비용	3,33		204,624,157,754		187,535,208,115
지분법투자손익	11,12		(23,405,936,491)		1,408,253,889
기타영업외수익	3,34		179,938,655,048		173,352,479,280
기타영업외비용	3,34		287,070,504,577		190,343,004,294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		1,421,368,007,366		277,301,481,224
법인세비용	35		430,712,512,057		133,648,428,872
VI. 연결순이익			990,655,495,309		143,653,052,352
VII. 기타포괄손익			129,623,841,284		71,054,245,713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0,256,055,223)		(4,617,515,09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3	(8,064,009,146)		(4,543,836,146)	
지분법이익잉여금	11,12	(2,192,046,077)		(73,678,950)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39,879,896,507		75,671,760,809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6	20,375,203,607		(3,167,559,095)	
지분법자본변동	11,12	10,651,905,170		6,877,349,862	
파생상품평가손익	21	2,946,242,373		(491,760,179)	
해외사업환산손익		105,906,545,357		72,453,730,221	
VIII. 연결총포괄이익			1,120,279,336,593		214,707,298,064
연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992,512,355,206		146,855,718,145
비지배지분			(1,856,859,897)		(3,202,665,793)
연결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1,121,344,570,238		215,432,681,034
비지배지분			(1,065,233,645)		(725,382,969)
IX. 주당이익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37		29,458		4,359

-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 변동표

제 40(당)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39(전)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과 목	지배주주지분				비지배주주지분	총 계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I. 2014.01.01.(전기초)	171,377,095,000	477,284,160,127	5,682,230,930,647	(74,772,212,695)	38,338,750,090	6,294,458,723,169
1. 배당금의 지급	-	-	(33,692,031,000)	-	-	(33,692,031,000)
2. 비지배지분의 취득	-	(761,917,732)	-	-	(5,713,303,239)	(6,475,220,971)
3. 총포괄이익	-	-	142,238,128,172	73,194,552,861	(725,382,969)	214,707,298,065
당기순이익	-	-	146,855,718,145	-	(3,202,665,793)	143,653,052,35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4,543,911,023)	-	74,876	(4,543,836,147)
지분법이익잉여금	-	-	(73,678,950)	-	-	(73,678,95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3,167,559,095)	-	(3,167,559,095)
지분법자본변동	-	-	-	6,877,349,862	-	6,877,349,862
과생상품평가손실	-	-	-	(491,760,179)	-	(491,760,179)
해외사업환산손익	-	-	-	69,976,522,273	2,477,207,948	72,453,730,221
II. 2014.12.31.(전기말)	171,377,095,000	476,522,242,395	5,790,777,027,820	(1,577,659,834)	31,900,063,882	6,468,998,769,263
I. 2015.01.01.(당기초)	171,377,095,000	476,522,242,395	5,790,777,027,820	(1,577,659,834)	31,900,063,882	6,468,998,769,263
1. 배당금의 지급	-	-	(33,692,031,000)	-	-	(33,692,031,000)
2. 총포괄이익	-	-	982,259,149,073	139,085,421,165	(1,065,233,645)	1,120,279,336,593
당기순이익	-	-	992,512,355,206	-	(1,856,859,897)	990,655,495,30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8,061,160,056)	-	(2,849,090)	(8,064,009,146)
지분법이익잉여금	-	-	(2,192,046,077)	-	-	(2,192,046,077)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	20,375,203,607	-	20,375,203,607
지분법자본변동	-	-	-	10,651,905,170	-	10,651,905,170
과생상품평가이익	-	-	-	2,946,242,373	-	2,946,242,373
해외사업환산손익	-	-	-	105,112,070,015	794,475,342	105,906,545,357
II. 2015.12.31.(당기말)	171,377,095,000	476,522,242,395	6,739,344,145,893	137,507,761,331	30,834,830,237	7,555,586,074,856

-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 흐름표

제 40(당)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39(전)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과 목	제 40(당) 기		제 39(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95,626,910,168		308,483,946,403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2,825,790,464,686		387,586,718,779	
(1) 당기순이익	990,655,495,309		143,653,052,352	

(2) 조정사항	1,096,032,631,728		736,772,592,354	
법인세비용	430,712,512,057		133,648,428,872	
이자수익	(38,468,071,085)		(31,436,386,457)	
이자비용	69,947,513,679		88,418,934,819	
배당금수익	(588,387,880)		(3,860,606,370)	
지분법투자이익	(31,166,499,398)		(38,393,494,956)	
지분법투자손실	54,572,435,889		36,985,241,067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9,039,741,773)		(771,883,20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173,087,329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888,763,538)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9,985,204,973		53,742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360,693,229)		-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9,853,202,916		293,544,064	
외화환산손실	56,483,669,492		47,480,454,771	
외화환산이익	(29,986,640,126)		(34,354,476,061)	
파생상품평가이익	(13,736,004,000)		(14,568,434,500)	
파생상품평가손실	245,000,000		-	
파생상품거래이익	(12,771,44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3,167,754,839)		(23,839,030,281)	
유형자산처분손실	15,811,558,714		11,180,246,388	
유형자산손상차손	86,558,845,118		35,186,820,940	
무형자산처분이익	(98,090,908)		-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36,589,800		(1,158,490,202)	
투자부동산처분이익	(300,753,696)		-	
매출채권처분손실	-		30,687,408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14,544,529,075)		16,983,293,932	
대손상각비	453,126,255		2,346,517,739	
기타의대손상각비	674,000,000		420,580,173	
감가상각비	484,827,471,613		490,093,458,590	
무형자산상각비	2,838,956,910		1,547,604,975	
지급입차료	-		134,000,983	
퇴직급여	26,922,842,039		20,601,747,171	
장기종업원급여	165,220,953		663,642,212	
잡손실	-		28,900,079	
(3) 운전자본의 변동	739,102,337,649		(492,838,925,927)	
매출채권	271,264,766,831		251,234,383,437	
기타채권	118,266,152,803		(45,201,287,752)	
재고자산	411,081,114,997		102,706,184,007	
기타금융자산	4,160,199,170		(45,350,582,146)	
기타자산	3,076,801,209		(27,714,216,750)	
매입채무	(23,834,004,935)		(701,749,846,205)	
기타채무	6,081,707,207		33,075,031,440	
기타금융부채	6,905,957,020		(30,852,630,492)	
기타부채	(37,436,956,436)		5,564,664,140	
충당부채	12,952,666,463		(14,238,923,391)	
순확정급여채무	(33,416,066,680)		(20,311,702,215)	

2. 법인세의 납부	(230,163,554,518)		(79,102,772,376)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73,452,580,553)		(390,589,243,56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64,720,196,286		103,302,138,290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5,595,244,935		8,528,612,563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2,500,000		1,5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921,714,165		312,590,000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5,618,174,169		5,254,125,121	
유형자산의 처분	53,170,182,356		34,017,368,696	
무형자산의 처분	130,372,726		-	
투자부동산의 처분	3,000,000,000		335,000,000	
이자의 수취	38,693,620,055		31,394,985,918	
배당금의 수취	37,588,387,880		23,457,955,992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438,172,776,839)		(493,891,381,855)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578,598,889,042		29,924,122,037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17,000,000,000		2,492,77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10,034,804,400		66,808,978,832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138,265,420,000		64,106,080,000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39,000,000,000		17,459,256,970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2,280,939,818		24,515,361,637	
기타자산의 증가	279,150,000,000		-	
파생상품의 정산	9,985,204,973		-	
유형자산의 취득	355,355,967,948		290,988,026,236	
무형자산의 취득	8,501,550,658		8,836,833	
투자부동산의 취득	-		78,226,54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33,868,224,696)		47,592,207,421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034,020,826,242		4,784,347,197,144	
단기차입금의 차입	2,558,969,903,242		4,135,618,797,144	
장기차입금의 차입	4,788,423,000		-	
사채의 발행	470,262,500,000		648,728,4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367,889,050,938)		(4,736,754,989,723)	
단기차입금의 상환	2,704,289,337,216		3,957,702,813,359	
장기차입금의 상환	192,360,437,800		-	
사채의 상환	367,421,174,649		650,968,333,333	
비지배지분의 취득	-		6,475,220,971	
배당금의 지급	33,692,031,000		33,692,031,000	
이자의 지급	70,126,070,273		87,916,591,06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I+ II+ III)		988,306,104,919		(34,513,089,741)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949,302,735,384		979,089,879,334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4,609,815,565		4,725,945,791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942,218,655,868		949,302,735,384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1. 일반사항

## 1-1 지배기업의 개요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76년 3월 16일 석유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수, 대산 및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서울본사·부산·대구·대전지점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1991년 5월30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KRX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1992년 2월 307억원의 유상증자를 포함한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보통주 자본금은 1,714억원입니다.

지배기업은 2009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롯데대산유화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12년 12월 27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케이피케미칼을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에서 롯데케미칼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롯데물산(주)	10,718,818 주	31.27%
(주)호텔롯데	4,346,818 주	12.68%
Lotte Holdings Co., Ltd.	3,186,000 주	9.30%
자기주식	583,388 주	1.70%
기타	15,440,395 주	45.05%
계	34,275,419 주	100.00%

## 1-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한 종속기업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한 종속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함)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회사명	결산일	업종	연결실체 지분율	비지배지분 지분율	소재지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12.31.	판매	100.00%	-	중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12.31.	화학 제조	100.00%	-	중국
Lotte Chemical (Jiaxing) Corp.	12.31.	화학 제조	100.00%	-	중국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Sdn. Bhd.와 그 종속기업	12.31.	화학 제조	100.00%	-	말레이시아 등
삼박엘에프티(주)	12.31.	화학 제조	99.51%	0.49%	국내
테크항공(주)	12.31.	부품 제조	100.00%	-	국내
Lotte Chemical Alabama Corp.	12.31.	화학 제조	100.00%	-	미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	12.31.	화학 제조	100.00%	-	중국

(주)케이피켄텍	12.31.	화학 제조	100.00%	-	국내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12.31.	화학 제조	75.01%	24.99%	파키스탄
Lotte Chemical UK Limited	12.31.	화학 제조	100.00%	-	영국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12.31.	판매	100.00%	-	폴란드
Lotte Chemical USACorp.	12.31.	화학 제조	100.00%	-	미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12.31.	화학 제조	100.00%	-	중국

(전기말)

회사명	결산일	업종	연결실체 지분율	비지배지분 지분율	소재지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12.31.	판매	100.00%	-	중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12.31.	화학 제조	100.00%	-	중국
Lotte Chemical (Jiaxing) Corp.	12.31.	화학 제조	100.00%	-	중국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Sdn. Bhd.와 그 중속기업	12.31.	화학 제조	100.00%	-	말레이시아 등
삼박엘에프티(주)	12.31.	화학 제조	99.51%	0.49%	국내
테크항공(주)	12.31.	부품 제조	100.00%	-	국내
Lotte Chemical Alabama Corp.	12.31.	화학 제조	100.00%	-	미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	12.31.	화학 제조	100.00%	-	중국
(주)케이피켄텍	12.31.	화학 제조	100.00%	-	국내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12.31.	화학 제조	75.01%	24.99%	파키스탄
Lotte Chemical UK Limited	12.31.	화학 제조	100.00%	-	영국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12.31.	판매	100.00%	-	폴란드
Lotte Chemical USACorp.	12.31.	화학 제조	100.00%	-	미국

(2) 당기와 전기 중에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거나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구분	종속기업명	사 유
신규포함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신규설립
신규포함	LACC, LLC	신규설립(주1)

(주1) Lotte Chemical USA Corp.의 공동영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석 13 참조).

(전 기)

구분	종속기업명	사 유
신규포함	Lotte Chemical USA Corp.	신규설립
제 외	Lotte Powergen Limited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에 포함 병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지배지분	비지배지분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40,702,009	24,849,028	37,977,156	-	27,573,881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34,494,095	15,860,677	14,804,629	-	35,550,143	-
Lotte Chemical (Jiaxing) Corp.	66,325,653	65,089,229	62,576,460	35,008,212	33,830,210	-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Sdn. Bhd.와 그 종속기업	954,861,081	977,042,171	166,274,456	48,970,805	1,713,860,783	2,797,208
삼박엘에프티(주)	26,949,560	27,762,338	26,774,071	3,195,882	24,741,945	-
테크항공(주)	6,250,995	11,418,873	13,594,199	8,070,913	(3,995,244)	-
Lotte Chemical Alabama Corp.	6,687,699	10,562,822	3,876,158	3,164,400	10,209,963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	9,911,884	16,095,178	4,259,111	7,513,009	14,234,942	-
(주)케이퍼켄텍	33,975,597	14,876,729	19,814,265	1,077,605	27,960,456	-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107,247,068	85,402,771	80,746,087	686,240	111,217,512	-
Lotte Chemical UK Limited	178,987,768	122,682,853	251,122,124	128,457,340	(77,908,843)	-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10,190,033	16,802	10,020,085	-	186,750	-
Lotte Chemical USA Corp.	1,875,760	208,177,474	149,320,227	-	60,733,007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3,201,416	3,494,181	3,160	-	6,692,437	-

(전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지배지분	비지배지분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37,410,293	24,394,519	36,149,344	-	25,655,468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42,817,982	12,641,676	24,976,281	-	30,483,377	-
Lotte Chemical (Jiaxing) Corp.	42,578,292	85,433,028	45,742,151	52,054,578	30,214,592	-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Sdn. Bhd.와 그 종속기업	702,773,543	1,108,832,498	291,523,766	60,815,227	1,456,682,079	2,584,969
삼박엘에프티(주)	23,957,469	30,201,974	31,989,860	3,609,186	18,560,397	-
테크항공(주)	2,701,835	12,010,438	10,274,351	10,431,386	(5,993,465)	-
Lotte Chemical Alabama Corp.	3,383,880	9,367,152	4,938,207	-	7,812,826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	8,288,729	16,908,934	4,605,659	7,089,200	13,502,804	-
(주)케이피캡텍	42,629,239	16,954,835	28,508,619	529,581	30,545,875	-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92,183,868	91,649,508	66,901,990	455,382	116,476,003	-
Lotte Chemical UK Limited	152,721,851	166,056,584	189,601,203	165,915,590	(36,738,358)	-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5,420,176	16,947	5,392,713	-	44,409	-
Lotte Chemical USA Corp.	17,583,783	-	-	-	17,583,783	-

(4) 당기와 전기 중 각 종속기업의 요약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천원)						
회사명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손익	비지배지분 총포괄손익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207,590,611	4,920,472	1,433,915	1,918,414	-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83,939,410	7,404,824	4,483,528	5,066,766	-	-
Lotte Chemical (Jiaxing) Corp.	118,429,601	(6,898,691)	(32,160,407)	(31,699,420)	-	-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Sdn. Bhd.와 그 종속기업	2,395,312,702	327,630,665	186,314,535	287,399,805	163,667	212,239
삼박엘에프티(주)	78,225,868	8,294,469	6,166,170	6,157,019	-	-
테크항공(주)	17,136,480	2,486,173	1,977,259	1,998,221	-	-
Lotte Chemical Alabama Corp.	11,792,920	1,041,064	1,814,723	2,397,137	-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	18,033,986	997,598	477,893	732,138	-	-
(주)케이피캡텍	134,026,871	(3,516,641)	(2,327,724)	(2,585,419)	-	-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372,826,896	(7,502,610)	(8,231,593)	(5,258,491)	-	-
Lotte Chemical UK Limited	331,135,218	(49,396,981)	(92,374,551)	(93,455,226)	-	-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24,139,274	208,827	143,606	142,340	-	-
Lotte Chemical USA Corp.	-	(2,385,198)	(2,380,042)	(603,067)	-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	(106,255)	(77,976)	(237,563)	-	-

(전 기)

(단위: 천원)						
회사명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손익	비지배지분 총포괄손익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215,415,440	1,774,689	1,323,128	1,801,578	-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81,390,852	5,375,282	3,820,815	4,003,230	-	-
Lotte Chemical (Jiaxing) Corp.	148,539,783	2,245,956	(2,714,114)	(1,696,185)	-	-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Sdn. Bhd.와 그 종속기업	2,771,696,286	16,708,588	(2,021,405)	57,414,734	(327,723)	(219,433)
삼박엘에프티(주)	72,833,322	1,178,946	(874,362)	(859,081)	-	-
테크항공(주)	15,393,026	2,203,931	1,041,465	859,345	-	-
Lotte Chemical Alabama Corp.	7,807,750	(496,089)	(428,991)	(117,808)	-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	9,752,091	(593,960)	(1,001,586)	(780,454)	-	-
(주)케이피캡텍	184,813,898	147,440	138,479	(205,199)	-	-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498,554,730	(26,638,794)	(11,518,621)	(2,039,158)	-	-
Lotte Chemical UK Limited	235,924,291	(20,616,198)	(68,204,487)	(67,791,568)	-	-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15,086,020	(4,208)	(97,137)	(94,623)	-	-
Lotte Chemical USA Corp.	-	(5,707)	(3,274)	644,983	-	-

(5) 당기와 전기 중 각 종속기업별로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과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배당 금액 중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몫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천원)					
회사명	비지배지분 소유지분율	누적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 귀속 당기순손익	비지배지분 귀속 총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지급 배당금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Sdn. Bhd.와 그 종속기업 (주 1)	-	2,797,208	163,667	212,239	-
삼박엘에프티(주)	0.49%	121,150	28,652	28,727	-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24.99%	27,916,472	(2,049,179)	(1,306,200)	-
합 계		30,834,830	(1,856,860)	(1,065,234)	-

(전 기)

(단위: 천원)					
회사명	비지배지분 소유지분율	누적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 귀속 당기순손익	비지배지분 귀속 총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지급 배당금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Sdn. Bhd.와 그 종속기업 (주 1)	-	2,584,969	(327,723)	(219,433)	-
삼박엘에프티(주)	0.49%	92,422	(4,337)	(4,262)	-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24.99%	29,222,672	(2,870,606)	(501,689)	-
합 계		31,900,063	(3,202,666)	(725,384)	-

(주1)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Sdn. Bhd.와 그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재무정보입니다.



(6) 당기 중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내역은 없으며 전기 중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거래전 지분율	거래후 지분율	지분대가	비지배지분의 증감	기타불입자본의 증감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주1)	60.00%	100.00%	6,475,221	(5,713,303)	(761,918)

(주1) 전기 중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이 지분 40%를 비지배주주로부터 취득하였습니다.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의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당기 연결재무제표는 2016년 3월 3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확정급여제도: 종업원기여금  
개정된 기준서는 기업이 확정급여제도를 회계처리할 때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이 용역과 연계되는 경우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개정 기준서는 기여금이 근무기간과 독립적이라면 기업은 동 기여금을 용역기간에 배분하는 대신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의 근무원가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 기여금이 있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기준서가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이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모든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부채(또는 자산)로 분류된조건부 대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와 관계없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후속적으로 측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 제외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동기업 뿐만 아니라 공동약정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
- 동 적용범위 제외규정은 공동약정 자체의 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에만 적용됨

동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이 개정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며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문단 12의 통합기준을 적용할 때 이루어진 경영진의 판단과 이러한 방법으로 통합된 영업부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통합된 영업부문이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공유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평가되었던 경제적 지표를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함
- 부문자산의 전체 자산으로의 조정은 부문부채의 공시 요구와 유사하게,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 보고되는 경우에만 공시가 요구됨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문단 12의 통합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최고영업의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목적상 부문자산의 전체 자산으로의 조정이 보고되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이 개정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며 재평가하는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자산 장부금액의재평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때 총장부금액을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를 기초로 수정하거나 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수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총장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당기에 재평가조정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공시'

이 개정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며 주요 경영인력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은 특수관계자공시가 요구되는 특수관계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은 경영인력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개정된 기준서는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포트폴리오 예외의 적용범위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그 밖의 계약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포트폴리오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의 부수적인 용역에 대한 기술은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투자부동산의 취득이 단일 자산의 취득인지 사업결합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의 부수적인 용역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가 사용되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과거년도에 그 취득이 단일자산의 취득인지 아니면 사업결합인지를 결정하는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가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해왔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새로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동 기준서는 금융상품 회계의 세 측면인 분류와 측정, 손상 그리고 위험회피회계를 다루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할 수 있으며 위험회피 회계를 제외하고 소급하여 적용하되 비교정보의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 회계에 대한 요구사항은 일부 제한적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동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해진 시행일에 개정 기준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개정 기준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다섯 단계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나타내도록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개정 기준서는 현행 수익인식과 관련된 모든 현행 기준서를 대체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 또는 변형된 소급을 하여 적용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동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해진 시행일에 개정 기준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 지분 취득의 회계처리

개정된 기준서는 공동영업자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회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관련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지배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기존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여 보고기업을 포함한 공동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최상위지배자의 동일지배 하에 있을 때는 개정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공동영업에 대한 최초 지분취득시와 동일한 공동영업에 대한 추가취득분 모두에 적용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연결실체는 동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해진 시행일에 개정 기준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 허용되는 감가상각 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화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수익은 자산을 사용하여 소비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기보다는 자산이 포함된 사업을 운영하여 창출되는 생성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므로 수익에 기초한 방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사용될 수 없고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무형자산의 상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이나 출자

개정 기준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매각이나 출자된 종속기업의 지배력 상실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1028호간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전액 인식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투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공시 개선

개정 기준서는 기존 요구사항을 유의적으로 변경한다기보다는 다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중요성 요구사항
-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특정 항목에 대해 세분화할 수 있음
- 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표시하는 순서에 대하여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음
-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리하여 한 줄로 표시함

또한 개정 기준서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추가적인 중간합계를 나타내야 할 때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

개정 기준서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투자기업 예외사항의 적용에서 생기는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들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예외가,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인 모기업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들은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이 투자기업에 투자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연결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외의 모든 종속기업은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대한 개정 기준서는 투자자가 지분법을 적용할 때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그 종속회사 지분에 대하여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들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2-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예)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공정가치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측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기업회계기준 제 1039호나 기업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우발자산'에 따라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고 적절한 경우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지분을 취득일(즉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

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2-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이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 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 2-5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공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실체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결실체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자산을 제 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 2-6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연결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관계기업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식 2-4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2-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연결실체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실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다만 매각으로 인하여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 매각시점에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각한 이후에도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잔여 보유분에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결실체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2-8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실체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1) 재화의 판매

연결실체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 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 (3) 임대수익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식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식 2-9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4) 용역의 제공

연결실체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5) 라이선스 수수료 및 로열티수익

연결실체는 라이선스 수수료 및 로열티수익에 대해서는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 2-9 리스

### (1) 리스이용자

연결실체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주석 2-11 참고)에 따라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 기준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리스제공자

당사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수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0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위험회피회계정책에 대해서는 주석 2-23 참고)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환율

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자본(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1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2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3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4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 2-1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개별법)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2-16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자산이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연결실체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

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5) 대여금및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차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연결실체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 2-1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로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건 물	10~50년
구 축 물	15~50년
기 계 장 치	6~30년
차 량 운 반 구	4년~5년
공 구 와 기 구	4년~5년
비 품	4년~5년
기타의유형자산	1년~5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9 무형자산

###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실체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20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

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 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21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비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 2-22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 (1) 부채·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4)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이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5)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7)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23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1)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는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합성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합성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비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재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2)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 (3) 공정가치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현금흐름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기타자본구성요소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재분류 된금액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2-24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 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2-25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부채 등의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 상세한 주식사항은 3월 1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40(당) 기말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39(전) 기말 2014년 12월 31일 현재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식	제 40(당) 기말		제 39(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4,107,127,557,307		3,353,937,310,329
1. 현금및현금성자산	39	1,411,293,983,854		428,191,958,545	
2. 단기금융상품	4	841,697,947,914		738,099,058,872	
3. 매도가능금융자산	6	45,639,020,000		348,875,000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38	769,375,481,316		1,063,925,771,615	
5. 재고자산	8	698,176,494,369		966,454,843,373	
6. 금융리스채권	9	297,322,429		297,322,429	
7. 기타금융자산	7	22,674,814,991		8,736,600,309	
8. 기타유동자산	10	317,972,492,434		147,882,880,186	
II. 비유동자산			6,418,121,817,710		6,289,484,193,506
1. 장기금융상품	4	67,509,500,000		50,512,000,000	
2. 매도가능금융자산	6	193,646,663,061		167,356,241,673	
3. 금융리스채권	9	4,812,142,245		5,012,249,876	
4. 종속기업투자	11	1,790,421,994,563		1,760,999,666,206	
5. 관계기업투자	12	1,041,587,860,533		903,322,440,533	

6. 공동기업투자	13	735,567,729,357		707,510,729,357	
7. 유형자산	14	2,465,000,620,565		2,584,265,462,320	
8. 투자부동산	15	83,804,807,214		84,039,485,050	
9. 무형자산	16	18,813,643,602		13,405,359,430	
10. 기타금융자산	7	12,391,456,570		11,088,479,061	
11. 기타비유동자산	10	4,565,400,000		1,972,080,000	
자 산 총 계			10,525,249,375,017		9,643,421,503,835
부 채					
I. 유동부채			1,510,271,931,879		1,534,307,825,987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38	512,307,444,955		457,015,335,237	
2. 차입금및사채	18	751,508,310,599		929,686,006,679	
3. 당기법인세부채		155,920,346,936		48,314,617,255	
4. 기타금융부채	19	39,630,921,923		40,726,145,736	
5. 기타유동부채	22	46,796,335,466		58,565,721,080	
6. 충당부채	23	4,108,572,000		-	
II. 비유동부채			1,543,662,997,590		1,489,718,056,592
1. 차입금및사채	18	1,328,976,285,460		1,252,395,528,837	
2. 순확정급여부채	21	23,202,185,854		20,653,605,663	
3. 이연법인세부채	33	168,310,120,732		186,750,047,535	
4. 기타금융부채	19	17,651,966,771		26,064,100,154	
5. 기타비유동부채	22	3,358,440,773		3,854,774,403	
6. 충당부채	23	2,163,998,000		-	
부 채 총 계			3,053,934,929,469		3,024,025,882,579
자 본					
I. 자본금	24	171,377,095,000		171,377,095,000	
II. 기타불입자본	25	771,055,831,115		771,055,831,115	
III. 이익잉여금	26	6,510,227,079,633		5,681,629,701,321	
IV. 기타자본구성요소	27	18,654,439,800		(4,667,006,180)	
자 본 총 계			7,471,314,445,548		6,619,395,621,25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0,525,249,375,017		9,643,421,503,835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40(당)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39(전)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과 목	주석	제 40(당) 기		제 39(전) 기	
I. 매출	28,38		8,471,946,291,836		11,194,207,055,691
II. 매출원가	34,38		6,796,676,418,843		10,486,160,673,662
III. 매출총이익			1,675,269,872,993		708,046,382,029
판매비와관리비	29,34		339,497,882,999		333,669,034,018
IV. 영업이익			1,335,771,989,994		374,377,348,011
금융수익	30		105,841,229,713		115,676,297,275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40(당)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39(전)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총 계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매도가능금융 자산평가손익	파생상품 평가손익	
I. 2014.01.01.(전기초)	171,377,095,000	22,913,227,871	748,142,603,244	5,493,496,632,733	2,903,092,376	(3,910,779,282)	6,434,921,871,942
1. 배당금의 지급	-	-	-	(33,692,031,000)	-	-	(33,692,031,000)
2. 총포괄이익	-	-	-	221,825,099,588	(3,167,559,095)	(491,760,179)	218,165,780,314
당기순이익	-	-	-	225,561,335,282	-	-	225,561,335,282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3,736,235,694)	-	-	(3,736,235,694)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	-	-	(3,167,559,095)	-	(3,167,559,095)
파생상품평가손실	-	-	-	-	-	(491,760,179)	(491,760,179)
II. 2014.12.31.(전기말)	171,377,095,000	22,913,227,871	748,142,603,244	5,681,629,701,321	(264,466,719)	(4,402,539,461)	6,619,395,621,256
I. 2015.01.01.(당기초)	171,377,095,000	22,913,227,871	748,142,603,244	5,681,629,701,321	(264,466,719)	(4,402,539,461)	6,619,395,621,256
1. 배당금의 지급	-	-	-	(33,692,031,000)	-	-	(33,692,031,000)
2. 총포괄이익	-	-	-	862,289,409,312	20,375,203,607	2,946,242,373	885,610,855,292
당기순이익	-	-	-	870,346,257,393	-	-	870,346,257,393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8,056,848,081)	-	-	(8,056,848,081)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	-	-	20,375,203,607	-	20,375,203,607
파생상품평가이익	-	-	-	-	-	2,946,242,373	2,946,242,373
II. 2015.12.31.(당기말)	171,377,095,000	22,913,227,871	748,142,603,244	6,510,227,079,633	20,110,736,888	(1,456,297,088)	7,471,314,445,548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40(당)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39(전)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40(당) 기	제 39(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53,154,857,481	254,436,484,408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2,276,660,959,430	336,246,435,498
(1) 당기순이익	870,346,257,393	225,561,335,282
(2) 조정사항	791,818,780,051	526,660,577,528
법인세비용	307,800,676,215	87,430,333,335
이자수익	(36,101,219,628)	(29,648,287,559)
이자비용	56,812,184,304	69,671,043,284
배당금수익	(67,809,487,880)	(30,971,082,791)

외화환산손실	19,428,687,144		38,132,549,201	
외화환산이익	(10,412,028,503)		(23,833,980,592)	
과생상품평가손실	245,000,000		-	
과생상품평가이익	(13,736,004,000)		(14,568,434,500)	
과생상품거래이익	(12,771,44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348,639,982)		-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9,853,202,916		293,544,064	
중속기업투자손상차손	108,859,740,700		57,305,510,879	
공동기업투자손상차손	10,943,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2,829,571,825)		(23,819,029,685)	
유형자산처분손실	12,841,634,300		6,690,726,396	
유형자산손상차손	30,000,000,000		11,800,000,000	
무형자산처분이익	(98,090,908)		-	
무형자산손상차손	36,589,800		-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1,158,490,202)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4,234,409,315)		5,643,438,000	
대손상각비	225,784,384		6,826,787	
기타의대손상각비	29,811,000,000		-	
감가상각비	325,968,530,104		354,199,715,276	
무형자산상각비	2,426,167,932		899,512,940	
퇴직급여	20,642,206,423		17,897,521,542	
장기종업원급여	156,695,870		660,261,074	
잡손실	-		28,900,079	
충당부채의 전입	4,108,572,000		-	
(3) 운전자본의 변동	614,495,921,986		(415,975,477,312)	
매출채권의 감소	251,803,921,694		94,605,631,843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114,827,949,119		(52,718,016,098)	
재고자산의 감소	272,512,758,319		44,382,121,321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4,793,953,069		(9,911,867,196)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6,723,072,658		(479,657,262,931)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1,198,589,412)		14,858,203,558	
기타금융부채의 증가(감소)	2,293,361,535		(25,384,940,820)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18,535,626,146)		15,876,822,218	
순확정급여부채의 감소	(28,724,878,850)		(18,026,169,207)	
2. 법인세의 납부	(223,506,101,949)		(81,809,951,09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77,404,459,386)		(686,007,840,154)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58,845,356,498		95,763,796,505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2,500,000		1,500,000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5,762,804,400		1,940,431,783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829,890,918		312,590,000	
유형자산의 처분	52,760,946,802		32,092,470,817	
투자부동산의 처분	-		335,000,000	
무형자산의 처분	130,372,726		-	
이자의 수취	31,549,353,772		30,110,721,114	
배당금의 수취	67,809,487,880		30,971,082,791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036,249,815,884)		(781,771,636,659)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48,598,889,042		436,606,017,521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17,000,000,000		-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2,810,631,943		3,579,281,677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10,034,804,400		66,808,978,832	
유형자산의 취득	258,112,629,452		176,194,401,119	
투자부동산의 취득	-		78,226,540	
무형자산의 취득	4,995,371,990		594,000	
선급금의 증가	279,150,000,000		-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138,282,069,057		16,938,800,000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138,265,420,000		64,106,080,000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39,000,000,000		17,459,256,97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4,796,091,397)		(9,950,717,962)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029,741,890,791		4,493,304,883,828	
단기차입금의 차입	2,559,479,390,791		3,844,576,483,828	
사채의 증가	470,262,500,000		648,728,4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224,537,982,188)		(4,503,255,601,790)	
단기차입금의 상환	2,684,361,186,290		3,750,249,438,891	
유동성장기부채 상환	148,388,860,000		650,000,000,000	
유동성사채 상환	300,000,000,000		-	
이자의 지급	58,095,904,898		69,314,131,899	
배당금의 지급	33,692,031,000		33,692,031,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I + II + III)		980,954,306,698		(441,522,073,708)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28,191,958,545		870,246,197,877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 환율변동효과		2,147,718,611		(532,165,624)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411,293,983,854		428,191,958,545

##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1. 회사의 개요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76년 3월 16일 석유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여수, 대산 및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서울본사·부산·대구·대전지점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91년 5월 30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KRX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1992년 2월 307억원의 유상증자를 포함한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보통주 자본금은 1,714억원입니다.

당사는 2009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롯데대산유화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12년 12월 27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케이피케미칼을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에서 롯데케미칼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소유주식수	지 분 율
롯데물산(주)	10,718,818 주	31.27%
(주)호텔롯데	4,346,818 주	12.68%

Lotte Holdings Co., Ltd.	3,186,000 주	9.30%
자기주식	583,388 주	1.70%
기타	15,440,395 주	45.05%
계	34,275,419 주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당기 재무제표는 2016년 3월 3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확정급여제도: 종업원기여금  
개정된 기준서는 기업이 확정급여제도를 회계처리할 때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이 용역과 연계되는 경우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개정 기준서는 기여금이 근무기간과 독립적이라면 기업은 동 기여금을 용역기간에 배분하는 대신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의 근무원가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당사는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 기여금이 있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이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모든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부채(또는 자산)로 분류된조건부 대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와 관계없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후속적으로 측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회계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한편, 공동약정과 관련한 개정사항도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다음과 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 제외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동기업 뿐만 아니라 공동약정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
- 동 적용범위 제외규정은 공동약정 자체의 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에만 적용됨

동 개정사항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이 개정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며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문단 12의 통합기준을 적용할 때 이루어진 경영진의 판단과 이러한 방법으로 통합된 영업부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통합된 영업부문이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공유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평가되었던 경제적 지표를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함
- 부문자산의 전체 자산으로의 조정은 부문부채의 공시 요구와 유사하게,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 보고되는 경우에만 공시가 요구됨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문단 12의 통합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최고영업의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목적상 부문자산의 전체 자산으로의 조정이 보고되므로 동 개정사항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이 개정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며 재평가하는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자산 장부금액의 재평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때 총장부금액을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를 기초로 수정하거나 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수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총장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당사는 당기에 재평가조정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개정된 기준서는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포트폴리오 예외의 적용범위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그 밖의 계약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포트폴리오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의 부수적인 용역에 대한 기술은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투자부동산의 취득이 단일 자산의 취득인지 사업결합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의 부수적인 용역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가 사용되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당사는 과거년도에 그 취득이 단일자산의 취득인지 아니면 사업결합인지를 결정하는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가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해왔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회계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새로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동 기준서는 금융상품 회계의 세 측면인 분류와 측정, 손상 그리고 위험회피회계를 다루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할 수 있으며 위험회피 회계를 제외하고 소급하여 적용하되 비교정보의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 회계에 대한 요구사항은 일부 제한적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당사는 동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해진 시행일에 개정 기준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개정 기준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다섯 단계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나타내도록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개정 기준서는 현행 수익 인식과 관련된 모든 현행 기준서를 대체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 또는 변형된 소급을 하여 적용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동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해진 시행일에 개정 기준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 지분 취득의 회계처리

개정된 기준서는 공동영업자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회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관련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지배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기존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여 보고기업을 포함한 공동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최상위 지배자의 동일지배 하에 있을 때는 개정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공동영업에 대한 최초 지분취득시와 동일한 공동영업에 대한 추가취득분 모두에 적용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동 기준서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 허용되는 감가상각 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화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수익은 자산을 사용하여 소비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기보다는 자산이

포함된 사업을 운영하여 창출되는 생성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므로수익에 기초한 방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사용될 수 없고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무형자산의 상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기준서는 201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지분법  
개정 기준서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의 선택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중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공시 개선  
개정 기준서는 기존 요구사항을 유의적으로 변경한다기보다는 다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중요성 요구사항
-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특정 항목에 대해 세분화할 수 있음
- 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표시하는 순서에 대하여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음
-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리하여 한 줄로 표시함

또한 개정 기준서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추가적인 중간합계를 나타내야 할 때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2-2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1) 재화의 판매

당사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 (3) 임대수익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식에 대한 당사의 회계정책은 주석 2-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4) 용역의 제공

당사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총예상 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5) 라이선스 수수료 및 로열티수익

당사는 라이선스 수수료 및 로열티수익에 대해서는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 2-3 리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2-3-1 리스이용자

당사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해서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 기준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3-2 리스제공자

당사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수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4 외화환산

당사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위험회피회계정책에 대해서는 주석 2-16 참고)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2-5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 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6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당사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 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 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 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 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 2-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

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개별법)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2-9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적절하다면) 그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자산이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당사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대여금및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당사의 과거 경험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0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건 물	10~50년
구 축 물	15~40년
기 계 장 치	7~15년
차 량 운 반 구	4년
비 품	4년
공 구 와 기 구	4년
기타의유형자산	1~5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3 무형자산

###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금액으로 인식합니다.

###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4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 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5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 (1) 부채·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4)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이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다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7)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6 파생상품

당사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1)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는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합성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합성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재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2)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 (3) 공정가치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현금흐름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재분류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2-17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 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2-18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부채 등의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 상세한 주식사항은 3월 1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제 40 기	제 39 기
주당배당금 (원)	2,500	1,000
배당총액 (원)	84,230,077,500	33,692,031,000
시가배당율 (%)	1.04.	0.59

※ 시가배당율 산정시 시가는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전 과거 1주일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주가를 사용 하였음.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25. 생략 26. 위 각호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6. 전기공사업 27.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시설운영관리업 28. 위 각호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	신규사업(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공사 사업, 수처리 사업) 영위(관련 면허 취득 등)를 위하여 정관상 목적사업 추가
제 2 장 자본 및 주식	제 2 장 주식	제목 변경

<p>제8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p> <p>①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천오백만주 로 한다.</p> <p>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9%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p> <p>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 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p> <p>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 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 한다.</p> <p>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 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 환된다. (뒷부분 생략)</p>	<p>제8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p> <p>①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 의 4분의 1 범위 내로 한다.</p> <p>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p> <p>③ 우선주식은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 배당 우선권을 가지는 주식을 독립 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조합하여 발행할 수 있 다.</p> <p>④ 제3항에 의하여 참가적 우선주식을 발행할 경 우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 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 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p> <p>⑤ 제3항에 의하여 누적적 우선주식을 발행할 경 우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 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 한다.</p> <p>⑧ 이사회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우선주식의 존속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 환된다. (뒷부분 생략)</p>	<p>- 발행주식총수의 증가에 따라 우선 주식 발행한도를 연동</p> <p>- 우선배당률, 우선주식 종류, 존속 기간을 다양화하여, 보다 용이하게 자금 확보 가능</p>
---	---	--

<p>제10조 (신주 인수권)</p> <p>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li> <li>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li> <li>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li> <li>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li> <li>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과 국내외 금융기관 및 외국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li> </ol> <p>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p> <p>제10조의 3 (일반공모증자)</p> <p>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하는 외국의 합작법인과 국내외 금융기관 및 외국투자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p>	<p>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p> <p>①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li> <li>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li> <li>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li> </ol> <p>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li> <li>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li> <li>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li> <li>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li> </ol> <p>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일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p> <p>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p>	<p>- 신주 발행 방식, 절차 및 실권주 처리를 법령에 따라 구체화</p> <p>- 개정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반영</p> <p>- 변경(안) 제10조에 반영</p>
--	--	--

	<p>⑤ 본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⑥ 본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p>	
--	--	--

<p>규정 없음</p>	<p>제1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p> <p>①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본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본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p> <p>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본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p> <p>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p> <p>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p> <p>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p> <p>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p> <p>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p> <p>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재임 또는 재직기간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정한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고급인력 유치와 전문경영인에 대한 동기부여수단으로 활용 가능</p> <p>- 상법 제340조의2, 제340조의3, 제542조의3 반영</p>
--------------	--	---

	<p>⑧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li> <li>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li> <li>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li> <li>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ol>	
<p>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②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p>	<p>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②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p>	<p>문구 명확화</p>
<p>규정 없음</p>	<p>제16조(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결정하고, 대표이사에게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그 실행을 위임할 수 있다.</p>	<p>- 사채 발행 방법 간소화 - 상법 제469조 제1항, 제4항 반영</p>

<p>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p> <p>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p> <p>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li> <li>2.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li> <li>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li> <li>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li> <li>5.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li> </ol> <p>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li> <li>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li> <li>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li> </ol>	<p>- 전환사채 발행 방식을 법령에 따라 구체화</p> <p>- 개정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 제165조의6 제1항및제4항 반영</p>
--	---	--

<p>제17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p> <p>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제18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p> <p>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li> <li>2.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li> <li>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li> <li>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li> <li>5.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li> </ol> <p>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li> <li>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li> <li>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li> </ol>	<p>-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방식을 법령에 따라 구체화</p> <p>- 개정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 제165조의6 제1항및제4항 반영</p>
<p>제19조 (소집권자)</p> <p>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0조 (소집권자)</p> <p>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조문 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p>
<p>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p> <p>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	<p>제21조 (소집통지 및 공고)</p> <p>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	<p>- 주주총회 소집통지 방법다양화 (전자문서 방식)</p> <p>- 상법 제363조 반영</p>

제22조 (의장)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의장)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
제26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방법 다양화 - 상법 제368조의2 제1항 반영
제2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주 아닌 자도 의결권 대리행사 가능하도록 함 - 상법 제368조 제2항 반영
제30조 (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31조 (이사의 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② 본 회사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이사의 최대 한도를 규정
제33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규정 없음	제34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인원수를 미달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인원수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 결원시 보선 방법 추가 - 상법 제542조의8 제3항 반영
제35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업무를 총괄하고,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결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미 명확화
규정 없음	제37조(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강경)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으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사의 적극적인 경영을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이익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 개정상법 제400조 제2항, 제415조 반영

<p>제36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p> <p>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p> <p>② 대표이사(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는 회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이사회를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 긴급한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통지기간 단축</p> <p>- 상법 제390조 제3항 단서 반영</p>
<p>제37조 (위원회)</p> <p>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1. 집행위원회</p> <p>2. 감사위원회</p> <p>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p> <p>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p> <p>② 각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p> <p>③ 위원회에 관하여는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9조 (위원회)</p> <p>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1. 감사위원회</p> <p>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p> <p>3. 투명경영위원회</p> <p>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p> <p>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p> <p>③ 위원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당사에 실제 설치된 위원회만 반영 (집행위원회 삭제)</p> <p>- 투명경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 추가 (상법 제393조의2 제1항)</p> <p>[당사에 설치된 내부거래위원회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 및 윤리경영)와 동일]</p>
<p>제37조의 1 (집행위원회)</p> <p>① 이사회와는 별도로 신속하고 원활한 경영의사 결정을 위하여 상임이사 및 집행간부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삭제</p>	<p>집행위원회는 당사에 실제 설치된 위원회가 아니므로 삭제</p>
<p>제37조의 2 (감사위원회)</p> <p>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37조 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2/3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의 자격은 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사외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p> <p>④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p>	<p>삭제</p>	<p>- 별도의 장(제6장)으로 이관, 자세하게 규정</p>
<p>제37조의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p> <p>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37조 ①의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39조의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p> <p>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조문 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p>

<p>제39조 (이사회 결의방법)</p> <p>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p>	<p>제41조 (이사회 결의방법)</p> <p>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제398조 및 제415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p> <p>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 상법 제397조의2, 제398조, 제415조의2 제3항반영 (법령상 이사회 특별결의사항 추가)</p> <p>- 상법 제391조 제2항 반영(컨퍼런스 방식의 이사회 결의 허용)</p>
<p>규정 없음</p>	<p>제 6 장 감 사 위 원 회</p> <p>제45조(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p> <p>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 이사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p>	<p>- 감사위원회 규정 상세화</p> <p>- 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1, 제542조의12 반영</p>

<p>규정 없음</p>	<p>제46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p> <p>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p> <p>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대표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p> <p>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p> <p>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p> <p>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p>	<p>- 감사위원회 규정 상세화 - 상법 제415조의2 등 반영 (감사의 직무 준용)</p>
<p>규정 없음</p>	<p>제47조(감사록)</p> <p>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 감사위원회 규정 상세화 - 상법 제413조의2 등 반영</p>

<p>제44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p> <p>①, ② 생략</p> <p>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49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p> <p>①, ② 생략</p> <p>③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p> <p>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p> <p>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p> <p>④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3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 재무제표 승인은 정기 주주총회 승인 사항이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 가능하도록 함</p> <p>- 개정상법 제449조의2 반영</p>
<p>제46조 (이익배당)</p> <p>①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p>	<p>제51조 (이익배당)</p> <p>①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p>	<p>- 현물배당 방식의 이익배당 허용(다양한 방법에 의한 이익배당 도모)</p> <p>- 상법 규정에 따라 주식배당의 한도 규정?(주주의 현금 배당권보호)</p> <p>- 상법 제462조의4 제1항, 제462조의2 제1항 단서 반영</p>

규정 없음	<p>제51조의2(중간배당)</p> <p>① 본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li> <li>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li> <li>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li> <li>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li> <li>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li> <li>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li> </ol> <p>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 중간배당 허용 근거 규정 추가</p> <p>- 상법 제462조의3 반영</p>
규정 없음	<p>부칙(2016.03.18)</p> <p>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자형	1957.02.24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김철수	1956.09.28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김윤하	1957.04.09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박용석	1955.02.10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총 ( 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자형	現. 롯데케미칼 생산본부장(부사장)	前.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장 前. 롯데케미칼 울산 공장장	없음
김철수	-	前. 관세청 차장 前. 부산세관 관장	없음
김윤하	-	前. 금강원 일반은행 검사국 국장	없음
박용석	現.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前. 대검찰청 차장 前. 법무연수원장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철수	1956.09.28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김윤하	1957.04.09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철수	-	前. 관세청 차장 前. 부산세관 관장	없음
김윤하	-	前. 금강원 일반은행 검사국 국장	없음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7 ( 4 )	7 ( 4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50억원	270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1) 이사의 수 : 상기 이사의 수는 등기이사의 수입
- 2)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등기이사 7명 및 비등기임원 에 대한 보수최고한도액임

